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5. 2. .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1. 진선미 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전체회의(2024.9.24.) : 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차 전체회의(2024.9.25.) : 상정

제3차 전체회의(2024.11.26.) : 상정

제420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법안심사소위(2024.12.23.) :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421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전체회의(2025.1.7.) : 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진선미 의원)

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,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, 현장실습 시설·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.

현재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'선도기업'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,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,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천우정)

▣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"청년"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사항 포함

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으로 하여금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,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2(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①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,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행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은 "현장실습[1]"을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음.

1)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7. "현장실습"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·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.

<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의 현장실습 관련 규정 >

조 문	제 목
제7조	현장실습
제7조의2	현장실습 운영기준
제8조	**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**
제9조	현장실습계약 등
제9조의2	현장실습시간
제9조의3	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
제9조의4	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
제9조의5	현장실습 안전교육 등
제24조	「근로기준법」의 준용 등
제25조	지도·점검 등
제26조 및 제27조	벌칙 및 과태료

동법 제8조[2]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,

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

2)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8조(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)
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(이하 "**현장실습산업체**"라 한다)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,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, **현장실습 시설·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**하여야 한다.
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**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**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**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**할 수 있다.
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**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**할 수 있다.

제7조(현장실습)
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(제1항),

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분야,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, 현장실습 시설·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(제2항),

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"직업교육훈련협의회"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(제3항),

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정보 제공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"산업체의 장"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4항).

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운영시간, 인정주체, 선정절차 등 운영 기준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 "선도기업"과 "참여기업"으로 구분하여 운영[3]되고 있으나,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이 일정 수준의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음.

<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비교 >

3) 선도기업은 참여기업 중 각 시·도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선도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교육청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됨.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일 140시간 이상 현장실습훈련이 필요한 직무(단순반복직무 제외)가 존재해야 하고,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실습 여건 및 고용환경이 우수해야 하며(산재 다발기업, 체불사업주명단에 포함된 기업 제외), 일정 규모 근로자(원칙 10인 이상, 업종별로 상이)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.

구분	선도기업	참여기업
현장실습 운영시간	1개월(20일)~3개월(60일)	
인정주체	시·도교육청	학교
선정절차	현장실사 →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→ 시·도교육청 현장실습 협의체 승인	현장실사 →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
지도·점검	필수(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제25조)	
노무사 기업코칭	필수	학교 선택
학생 순회지도	필 수	
사전 현장실사	필 수	
취업전환	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[4] 단, 4주(실습일 기준 20일) 이상의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참여 후	3학년 겨울방학 시작 이후 또는 다음 해 1월 1일 이후

자료: 교육부

선도기업은 참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원 사업 가점,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,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우대,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의 정부지원[5]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.

즉, 선도기업은 참여기업에 비해 실습여건, 업무의 질, 고용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선도기업이 현장실습산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게 되어 현장실습생의 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, 나아가 현장실습생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임.

---

4) 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0조(수료 및 졸업 등)
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.
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**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**으로 한다.
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5) 참고 1. 2024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참여기업체 지원정책

이에 개정안은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려는 취지로 보임.

최근 5년간 현장실습산업체로 참여하려는 기업은 안전점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체 기업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, 전체 현장실습산업체 대비 선도기업 비율은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.4%p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.

<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 현황 >

(단위: 개소)

연도	선도기업	참여기업	합 계
2019	7,634(62.7%)	4,543(37.3%)	12,177
2020	7,978(68.7%)	7,978(31.3%)	11,611
2021	8,587(69.7%)	3,737(30.3%)	12,157
2022	6,339(74.9%)	2,119(25.1%)	8,548
2023	5,490(73.5%)	1,976(26.5%)	7,466

자료: 교육부

이는 선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현장실습기업으로 선도기업 유인효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며,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보다 많은 우수한 기업이 현장실습산업체로 참여할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교육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도,

현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

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이 “인정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,

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인정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“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, 현장실습 직무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덧붙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지원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,

현행법 제7조의2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

안 제8조의2제2항이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을 동법 제7조의2제2항 ‘운영기준’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입장임.

정 부 수 정 안
제7조의2(현장실습 운영기준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(이하 "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"이라 한다)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**2. 우수 현장실습산업체 인정에 관한 사항** 3.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. 현장실습의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(우수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) ① 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은 **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위해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 중에서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, 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성, 현장실습 직무 분야의 전공 적합성 등 현장실습 여건**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**인정**할 수 있다. **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**

참고 1. 2024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참여기업체 지원정책

구분		'23년(기존)	'24년(변경 후)
1. 고졸채용기업	1. 청년 고용 증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·대상: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·내용: 청년(만15세이상 29세이하) 상시 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100% 공제	대상: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·내용: 청년(만15세이상 34세이하) 상시 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100% 공제
	2.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	대상: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,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~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·제조업 중소기업 ·내용: 기업 지원(적립)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립금액 및 적립·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	(미운영)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중단 (2023년 신청자들까지만 지원금 신청가능)
	3.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	대상: (기업)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대상 기업 사업주 (청년) 채용일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 ·내용: 최초 1년은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, 1,200만원)	대상: (기업)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우선대상 기업 사업주 (청년) 채용일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 ·내용: 최초 1년은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, 1,200만원)
	4. 기술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	·대상: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특성화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생 고용기업 ·내용: 보증비율 90%~95% 적용 보증료 0.3%~0.4% 감면	(좌동)
2. 현장실습 참여기업	5.인력개발비 (현장실습 비용) 세액공제	·대상: 현장실습 참여기업 ·내용: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, 식비, 교재비, 재료비의 세액공제	「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」신청에 따른 혜택 3번(심사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컨설팅 등의 자문서비스 제공) 내용 삭제
	6.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 지원금 지원	·대상: 기업 현장교사 ·내용: 1인당 최대 180만 원(월 최대 60만 원)	·대상: 기업 현장교사 ·내용: 1인당 최대 210만원 (담당 현장 실습생 인원 감소(3명까지→2명) 및 지급액 변경1명: 3만원(기존2만원) /2명: 3.5만원(기존2.5만원))
	7.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	·대상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고용하면서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·내용: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, 방호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장기, 저리	(좌동)

		조건 융자 지원 ·지원금액: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	
3. 현장실습 선도기업	8. 위험성평가 인정 인센티브	·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또는 선도기업 신청기업 ·내용: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현장실사 미실시 및 선도기업 지정	(좌동) ·내용: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은 현장실사 미실시 및 선도기업 지정(24년부터 내용 적용)
	9.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원 사업 가점 부여	·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	(미운영)
	10.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우대	·참여은행: 신한, 국민, 산업 ·내용: 기업대출 금리 우대(0.25%~1.3%) 등	(좌동) *금리 우대사항은 세부내용 참조
	11.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	·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보증료율 0.1%p 차감 적용	(좌동)
	12.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	·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5% 적용	(좌동)
	13.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	·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가점5점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가점 7점 부여	('25년 공고 기준) ·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가점 3점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 체결 기업 가점 7점 부여
	14.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평가 가점 부여	·대상: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기업 중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우대사항으로 심사시 선취업-후학습 분야 가점 5점 부여 등 ⇒ 선정 시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인증 혜택 제공	가점사항 추가 대기업: 10개→11개 중소기업: 12개→13개 선취업 후학습: 14개→15개
	15.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컨설팅 등 수수료 우대지원	·대상: 교육부 지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4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 지원 ※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	·대상: 교육부 지정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컨설팅 비용의 60~100% 수수료 지원(신보 이용 여부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)
	16. 기술보증기금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	대상: 현장실습 선도기업 ·내용: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[일자리평가 우수기업] 선정을 위한 5점 가점 부여	(좌동)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문정복)

정부 제출, 진선미 의원, 백승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